

평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08. 7.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구매를 의무화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 공공기관부터 친환경상품 구매를 솔선수범하여 구매 촉진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 받는 공공기관의 범위(안 제4조)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설치·구성 등(안 제5~10조)

- 공무원 및 관련전문가로 15인 이내로 구성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의 심의

다. 친환경상품 생산·구매 촉진(안 제11조)

- 군내 친환경상품 생산·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촉진시책 추진
 - ▶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계획수립, 교육·홍보 및 사업자 지원 등

라.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안 제12,13조)

- 친환경상품 구매 실적 및 구매계획 공표 및 강원도 제출

마. 친환경상품의 구매범위 및 구매예외(안 제14,15조)

- 의무구매범위를 정함으로써 친환경상품 구매 활성화
 - ▶ 용역 및 건설공사 등 계약시
- 구매예외 규정을 둠으로서 물품을 탄력적 구입
 - ▶ 일반상품과 가격대비 고가, 구입기간 장기소요, 긴급 물품 구입시, 친환경상품 품질저하 등 사유시

바. 친환경상품 생산·소비 촉진(안 제17~20조)

- 군내 친환경상품 생산·기술개발업체 지원 등
 - ▶ 친환경상품 생산·개발을 위한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 등에 참여하는 기업, 교육기관 등에 필요비용 일부 지원
- 군내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 우선구매 요청 및 행정지원

사. 포상 실시(안 제21조)

- 공공기관 포상 실시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활성화

아. 사무분장(안 제22조)

- 친환경상품 구매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부서간 업무분장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별첨
- 조 례 안 : 별첨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관계부서승인 : 해당 없음
- 입법예고 : 2008. 5. 1 ~ 5.20 실시,의견없음.

평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평창군이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상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을 위해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이행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 “자발적 협약”이란 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2. 「평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에 따른 의회사무과
3.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군수가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2장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제5조(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 설치·운영) ①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평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환경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으로 한다.

④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친환경상품 관련 전문가
2. 산업계 대표, 소비자 또는 사회단체 대표
3.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 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관내 친환경상품 생산·유통 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
6.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협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협회의 위원장은 협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사람(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서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업무 담당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①협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친환경상품 의무 구매제의 이행

제11조(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 ①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안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매·생산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그 밖에 군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12조(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②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군수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 실적을 매년 3월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군수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 법 제6조에 의한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15조(친환경상품 구매 예외) ①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친환경 상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제16조(교육훈련) ①군수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기관의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군수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13조의 규정된 친환경상품진흥원장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

제17조(생산·기술개발 지원) 군수는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해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군수는 친환경상품의 개발을 위해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개발해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친환경상품 정보제공) ①군수는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20조(녹색구매문화 증진사업) ①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 법인, 종교 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1조(포상)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및 관련부서, 생산자, 민간단체 및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22조(사무분장)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서간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업무 사무분장(제22조 관련)

1. 환경부서 : 친환경상품 소비·생산정책 총괄

- 친환경상품 구매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관이 제출한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의 취합과 공표
-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관이 제출한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 정책 수립 및 이행
 - 친환경상품 생산촉진을 위한 관내기업 지원시책 마련 및 시행
 - 친환경상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개발 및 이행 등
- 그 밖에 친환경상품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

2. 건설부서 :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촉진 업무

- 공사설계서 등에 친환경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시설·공사 설계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 등
-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에 발주한 공사에 사용된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상황 점검
 - 지방서 개정 등 친환경 건설 자재류 구매 촉진 실적 포함
-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 등에 대한 친환경 건설자재 구매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3.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읍·면사무소 :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

-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읍면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환경부서로 제출
-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읍면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 친환경상품 구매·용역계약 관련 교육(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 포함) 계획 수립 및 실시
- 친환경상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 역무대행,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친환경상품 사용 명시
 - 개별부서에서 소액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등 추진
 - 각종 간행물, 자료, 보고서 인쇄시 친환경 인쇄용지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등

관 계 법 령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친환경상품이 없는 경우
2. 친환경상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친환경상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친환경상품 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8조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①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당해 회계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행계획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①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에 따른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집계·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실적을 집계·공표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 ①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는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
 3. 그 밖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시·도 또는 시·군·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평창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제3조(일비) 평창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2·4·30>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2·2·16>